

## 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1조(예산의 과목 구분) 및 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·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주요항목은 분야·부문·정책사업, 세부항목은 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하며,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3조(세출예산 집행기준)〔별표2〕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,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일반운영비(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행사운영비 등), 자산취득비,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기준을 규정

## □ 지적사항

사례1>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집행하여야 할 기간제근로자 작업복을 구입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

사례2>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인 내방객 응대를 위한 쌍화골드, 비타음료, 기타 비품 구입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

사례3> 공공운영비 집행 대상인 관용차 타이어·배터리·번호판 교체·난방유·부동액 구입 등 관련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

사례4> 공공운영비 집행 대상인 통신·우편요금 납부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

사례5> 테이블 대여 등 행사용품 경비, 자원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강사료를 행사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

사례6>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행사 초청 인사 기념품 및 기관 선물 구입을 사무관리비로 집행

## ☐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사무관리비 집행기준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목별 세부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품의 시 확인할 것